



2026년 일본 우정민영화법 개정과 생명보험업계의 공정경쟁 쟁점

강윤지(姜潤智) 연구원

요약

일본은 2026년 6월 우정민영화법 등을 개정하여 간포생명 지분의 3분의 1 초과 보유를 당분간 의무화하고 추가 업무규제의 검토절차를 마련함.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정부의 간접 출자에 따른 경쟁상 우위와 규제 완화, 그룹 조직재편이 금융 자회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함. 국내에서는 국가 지급책임 등 제도적 차이를 전제로 공적 역할과 경쟁조건, 우체국망 비용 분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

1. 검토 배경

○ 일본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간포생명 지분 보유와 민간 생명보험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가 함께 논의되고 있음¹⁾

- 「우정민영화법²⁾」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2026년 6월 25일 법률 제50호로 공포되었으며, 일본우정³⁾의 간포생명 주식 보유와 업무규제 검토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⁴⁾
 - 일본은 간포생명 주식의 완전매각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의 기본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일본우정이 간포생명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⁵⁾
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정부가 출자하는 일본우정이 간포생명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정부 신용력에 따른 경쟁상 우위가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정한 경쟁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규제 완화에 반대함⁶⁾
 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일본우정그룹과 민간 생명보험회사가 각각의 강점과 특징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국민 이익과 생명보험시장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함

○ 이번 개정의 보험시장 관련 쟁점은 간포생명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정부 관여의 지속, 민간 보험회사와의 경쟁 조건 사이의 관계에 있음

- 간포생명은 일본우정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이며, 일본우정은 간포생명과의 업무위탁계약 등을 통해 전국 우체국에서 상품 판매와 계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⁷⁾

1) 衆議院(2026. 6. 11.), “第221回国会 総務委員会 第13号”

2)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고, 우편저금·보험으로 조성된 자금이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추진됨

3)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일본우편(日本郵便), 저금 등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유초은행(ゆうちょ銀行), 생명보험업을 담당하는 간포생명(かんぽ生命保険)을 산하에 둔 지주회사로, 법률에 따라 정부가 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정부 출자회사임

4) 参議院(2026), “郵政民営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：議案審議情報・議案要旨”

5) 参議院(2026), “郵政民営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律第50号”

6) 生命保険協会(2026. 6. 19.), “「郵政民営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」の成立について”

7) かんぽ生命保険(2026. 3.), “かんぽ生命の日本郵政グループにおける位置づけ”

- 일본우정과 일본우편은 우편·저금·보험을 전국 우체국에서 통합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, 금융 자회사 주식 처분 시에도 해당 책임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
- 본고는 간포생명의 지분 보유·업무규제·판매망 계약 및 그룹 조직재편에 관한 개정사항과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우려를 구분하여 살펴보고, 국내 우체국보험에 관한 검토사항을 제시함

2. 주요 내용

○ 일본우정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간포생명과 유초은행 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의무가 당분간 부과됨

- 일본 정부는 금융 자회사 주식을 전부 처분한 뒤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유 의무를 두는 것이며, 가능한 한 조기에 전량 처분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된다고 설명함
 - 주주권 찬성에서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은 보유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경우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수준임⁸⁾
- 간포생명은 일본우편과 보험창구 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계약 종료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, 일본우정의 의결권 행사가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시함⁹⁾
 - 따라서 지분 보유는 우체국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분 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님
- 보유 특례에는 종료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, 정부는 3년마다 실시되는 우정민영화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전량 매각 후 서비스 제공 책임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례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¹⁰⁾

○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지분 보유 의무가 정부의 간접 출자로 인한 계약자의 정부지원 기대와 지배주주·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함

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간접적인 정부 출자가 남으면 간포생명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계약자에게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함¹¹⁾
 - 다만 간포생명의 생명보험계약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부보증이 없고 보험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므로, 협회가 지적한 정부지원 기대는 법률상 지급보증과 구분됨¹²⁾
- 간포생명도 일본우정이 그룹 전체의 이익이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자사와 일반주주의 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위험요인으로 공시함
 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간포생명 주식의 완전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 제시와 실행을 요구함

8)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, “会社の解散について手順を教えてください, 「会社が解散するには」”(https://j-net21.smrj.go.jp/solution/qa/closure/Q0762.html)

9) かんぽ生命保険, “事業等のリスク, 「Ⅲ 事業固有」(1)①, (2)①~②, (3)①”(https://www.jp-life.japanpost.jp/IR/management/business_risk.html)

10) 衆議院(2026), “郵政民営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”

11) 生命保険協会(2026. 7. 23.), “「郵政民営化に関する意見募集」に対する意見について”

12) かんぽ生命保険, “簡易生命保険契約に関する重要なお知らせ, 「政府保証」”(https://www.jp-life.japanpost.jp/procedure/customer/ctm_fmctm_mn_juyo.html)

- 간포생명에 적용되는 추가 업무규제는 민간 생명보험회사와의 경쟁관계 및 간포생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도록 하였으며, 가입한도 인상이나 신규업무 제한 철폐가 이번 개정으로 직접 결정된 것은 아님
- 추가 업무규제는 민영화 이행기간에 다른 생명보험회사와의 적절한 경쟁관계와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생명보험회사에 없는 업무제한을 의미함
 - 간포생명의 신규업무 취급에는 사전 인가가 필요했으나 2021년 6월 9일 일본우정의 간포생명 주식 2분의 1 이상 처분 신고를 기점으로 사전신고 절차가 적용됨¹³⁾
 - 개정법은 위원회가 업무규제의 경쟁·경영 영향을 검증하고, 정부가 그 의견과 우정사업의 상황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규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함¹⁴⁾
 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정부 신용력을 배경으로 한 경쟁상 우위가 남은 상태에서 가입한도나 업무범위 제한까지 완화되면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함
 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완전매각을 통한 공정한 경쟁조건과 보험계약 인수·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절한 업무체계가 확보되기 전에는 추가 업무규제의 완화·철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, 경쟁영향 검토와 시장영향 전망의 공개를 요구함
- 보험판매망과 관련해서는 일본우편과 관련 보험회사 간 보험창구 업무계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고,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의 적정성을 사전심사하도록 함
- 계약 체결과 계약 변경에는 총무대신의 인가가 필요하되 경미한 변경은 제외되며, 전국에서 우편·저금·보험을 통합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수수료가 적정하게 정해졌는지를 심사함
 - 정부는 인가제 전환으로 보편적 서비스 확보에 적절하지 않은 보험창구 업무계약의 체결·변경·폐지를 제한하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함
 - 간포생명은 일본우편에 보험 모집·계약관리 등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, 보편적 서비스 확보에 불가결한 우체국망 유지비용 중 보험창구 업무계약에 배분된 금액을 별도의 출연금으로 부담함
 - 출연금은 우체국망의 예상 이용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, 위탁수수료에도 영업활동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포함되어 있어 간포생명은 이러한 부담이 경영·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시함
- 그룹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일본우정과 일본우편의 합병 검토가 규정되었으며, 생명보험협회는 지주회사의 사업위험이 금융 자회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함
- 정부는 공포 후 2년을 목표로 합병과 그룹 조직구조, 우체국망 유지비용의 회사 간 분담방식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, 합병 자체가 이번 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
 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겸하면 해당 사업위험이 금융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지주회사 사업을 위해 금융 자회사의 신용이 이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함

13) かんぽ生命保険(2021), “中期経営計画”

14) 衆議院(2026), “郵政民営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”

- 보험서비스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협회가 간포생명 주식의 완전매각 이후 민간 보험회사와의 상품 제휴와 다른 분야의 연계를 검증할 것을 제시하여, 자본 보유 이외의 보험서비스 제공 방식도 검토하도록 요구함

3. 시사점

○ 일본우정의 사례는 우체국보험의 공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수단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음

- 일본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자회사 자본 보유를 당분간 의무화하면서도 전량 매각 이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검증하여 특례의 폐지 등을 검토하도록 함
 - 국내 우체국보험은 농어촌·도서지역의 보편적 영업과 취약계층 대상 보험 보급을 공적 역할로 제시하고 있음¹⁵⁾
- 국내에서도 공적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지원·규제수단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대체 가능성 등의 논의 시에 일본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음

○ 우체국망 비용 부담에서는 공동운영 경비와 보험금 지급재원을 구분하고, 보험사업의 부담과 우체국망 이용 간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
- 국내의 2026년도 예산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,2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순보험료는 세입·세출 외 적립금으로 관리됨¹⁶⁾
- 한편 2026년 5월 개정된 「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」은 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 잉여금으로 우편사업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해당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¹⁷⁾
 - 따라서 기존 전출금의 세부 산정내역과 향후 결손보전 재원을 구분하여, 보험사업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부담과 다른 우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과제임

○ 우체국보험의 업무범위나 공적 지원방식 변경을 논의할 때에는 정부 관여의 형태가 민간 보험회사와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

-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간접적인 정부 출자가 경쟁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, 공정한 경쟁조건과 적절한 인수·지급체계가 확보되기 전의 추가 규제 완화에 반대함
 - 국내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경영하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는 반면¹⁸⁾, 간포생명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정부 보증이 없으므로¹⁹⁾ 일본의 규제 논의를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정부 관여와 지급책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

15) 우정사업본부, 서비스 범위 및 특징-우체국보험의 특징(<https://www.koreapost.go.kr/kpost/subIndex/4250.do>)

16) 국회예산정책처(2026), “2026 대한민국 재정”

17) 국가법령정보센터, “「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」 제3~4조 및 2026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21651호의 제8조 제2항·부칙”

18) 국가법령정보센터, “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, 제3~4조”

19) かんぽ生命保険, “簡易生命保険契約に関する重要なお知らせ, 「政府保証」”